

# 영주자이 시그니처 입주자모집공고



## ★청약시 부적격 관련 주요 유의사항★

■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부적격 청약세대가 다수 발생되고 있으니, 청약신청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특별공급 청약시) **특별공급은 1세대 1주택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청약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주로 부부 동시청약으로 부적격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2. (특별공급 청약시)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청약시 **1인가구 중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이가능하므로, 본 아파트에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3. (가점제 청약시)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4. (가점제 청약시) **부양가족산정은 청약자 본인을 제외**해야 하나, 청약자 본인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하여 부적격이 발생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양가족 산정시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단,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 청약시 영주자이 시그니처 홈페이지(http://xi.co.kr/yjs)에 기재된 '부적격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3.11.10.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12.06.(수)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영주시)은「주택법」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 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12.06.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영주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거주(주민등록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 형제, 자매 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영주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 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23.11.1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 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시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특별공급   |   |  |  |  | 일반공급   |                            |
|-------------|--|---|--|--|--|--|----------------------------|
|             | 기관추천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1순위  | 2순위                        |
| 청약통장        | 필요<br>(6개월 이상, 예치금)<br>※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br>부지 제공자, 장애인,<br>국가유공자 불필요 | 필요<br>(6개월 이상, 예치금)<br>※ 지역별/면적별 예치금<br>이상인 자 | 필요<br>(6개월 이상, 예치금)<br>※지역별/면적별 예치금<br>이상인 자 | 필요<br>(1순위, 6개월 이상,<br>예치금)<br>※지역별/면적별 예치금<br>이상인 자 | 필요<br>(1순위, 6개월 이상,<br>예치금)<br>※지역별/면적별 예치금<br>이상인 자 | 필요<br>(1순위, 6개월 이상,<br>예치금)<br>※지역별/면적별 예치금<br>이상인 자 | 필요<br>(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br>경우) |
| 세대주 요건      | -  | -   | -  | 필요   | -  | -  | -                          |
| 소득 또는 자산 기준 | -  | -   | 적용   | -  | 적용   | -  |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인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구분                                       |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YESKEY) | 네이버인증서 | KB국민인증서 | 토스인증서 |
|---|----------------|---------------|--------|---------|-------|
|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O              | O             | O      | O       | O     |
|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 O              | O             | X      | X       | X     |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은 본 주택 해당순위(특별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지속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나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함.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영주자이 시그니처" 인터넷 홈페이지(http://xi.co.kr/yjs)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될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자금조달 입주계획서 신고, 부동산 거래의 신고 의무화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영주시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비규제지역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 (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전매제한기간 | 없음   | 없음   |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구분 | 특별공급   |     | 일반공급  |                | 당첨자 발표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 1순위 | 2순위   |                |   |                                 |                                 |
| 일정 | 2023.12.18.(월)   |     | 2023.12.19.(화)  | 2023.12.20.(수) | 2023.12.27.(수)  | 2023.12.29.(금) ~ 2024.01.01.(월) | 2024.01.07.(일) ~ 2024.01.09.(화) |
| 방법 | 인터넷 청약 (09:00 ~ 17:30)   |     |   |                | 개별조회<br>(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당사 견본주택 방문<br>(10:00 ~ 16:00)   | 당사 견본주택 방문<br>(10:00 ~ 16:00)   |
| 장소 | <b>■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b><br>- PC : www.applyhome.co.kr<br>- 스마트폰앱<br>*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 <b>■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b><br>- PC : www.applyhome.co.kr<br>- 스마트폰앱 |                | <b>■ 견본주택 주소</b><br>- 주소 : 영주시 가흥동764-1[영주하이 시그니처 견본주택]<br>- 문의 : ☎ 1833-6344 |                                 |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앱 :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의 신고 등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외국인 포함)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주무관청에 부동산 거래의 신고 대상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합니다. 다만,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체결 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신고를 위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의 미제출 등 신고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 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 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를 납부 하여야 할 문서(과세문서)이며, 세액은

기재 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입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하며, 등기원인 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서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인지세는 수분양자 등은 직접납부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수입인지 사이트 <http://www.e-revenuestamp.or.kr>, 혹은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

- 2022.12.31. 개정된 「인지세법」 제8조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 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2023.11.10.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영주시 건축과 - 34654호(2023.12.04.)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상망동 산78-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3층, 지상 1~27층, 8개동 총 763세대

[특별공급 320세대 | 기관추천 특별공급 61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74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110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1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54세대 포함]

■ 입주예정일 : 2026년 1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민영주택)

(단위 : m<sup>2</sup>, 세대)

| 주택 구분 | 주택관리 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 | 약식 표기 | 주택공급면적(m <sup>2</sup> ) |         |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계약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       |        |       |     | 일반공급 세대수 | 최하층 우선 배정 세대수 |
|-------|------------|----|------------|-------|-------------------------|---------|----------|------------------|----------|----------|---------|----------|--------|-------|--------|-------|-----|----------|---------------|
|       |            |    |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          |          |         | 기관 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 부부 | 노부모 부양 | 생애 최초 | 계   |          |               |
| 민영 주택 | 2023000635 | 01 | 84.9584A   | 84A   | 84.9584                 | 25.9657 | 110.9241 | 55.8713          | 166.7954 | 55.0982  | 415     | 41       | 41     | 74    | 12     | 37    | 205 | 210      | 18            |
|       |            | 02 | 84.9797B   | 84B   | 84.9797                 | 25.7621 | 110.7418 | 55.8853          | 166.6271 | 55.1120  | 42      | 4        | 4      | 7     | 1      | 3     | 19  | 23       | 2             |
|       |            | 03 | 84.9917C   | 84C   | 84.9917                 | 27.2914 | 112.2831 | 55.8932          | 168.1763 | 55.1198  | 166     | 16       | 16     | 29    | 4      | 14    | 79  | 87       | 7             |
|       |            | 04 | 102.9756   | 102   | 102.9756                | 30.6301 | 133.6057 | 67.7199          | 201.3257 | 66.7829  | 67      | -        | 6      | -     | 2      | -     | 8   | 59       | 3             |
|       |            | 05 | 117.6356   | 117   | 117.6356                | 34.9868 | 152.6224 | 77.3608          | 229.9832 | 76.2904  | 73      | -        | 7      | -     | 2      | -     | 9   | 64       | 3             |
| 합계    |            |    |            |       |                         |         |          |                  |          |          | 763     | 61       | 74     | 110   | 21     | 54    | 320 | 443      | 33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 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sup>2</sup>)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sup>2</sup>)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sup>2</sup>) × 0.3025 또는 공급면적(m<sup>2</sup>) ÷ 3.3058]

• 면적표현은 소수점 4째 자리 제곱미터(m<sup>2</sup>)까지 표현되며(면적산출 근거에 의해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 처리), 공용면적을 세대별로 분배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비율 기준으로 소수점 4째 자리까지 산출 후 전체 총 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 합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주택형별 세부면적과 해당 동, 라인, 층은 상이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지상층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 보안 및 설비관련시설,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기타 지하층 등의 면적입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부면적과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부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시 상호정산합니다. 다만, 소수점 이하 면적증감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대지지분은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면적차이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공급 합니다. 단,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m<sup>2</sup>, 원)

| 약식 표기 | 동별   | 공급 세대수 | 층 구분   | 해당 세대수 | 공급금액        |             |            |             | 계약금 (10%)  |            | 중도금 (60%)  |            |            |            |            |            | 잔금 (30%)<br>입주지정 기간 |             |             |
|-------|--|--------|--------|--------|-------------|-------------|------------|-------------|------------|------------|------------|------------|------------|------------|------------|------------|---------------------|-------------|-------------|
|       |  |        |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세        | 계           | 1차         | 2차         | 1차 (10%)   | 2차 (10%)   | 3차 (10%)   | 4차 (10%)   | 5차 (10%)   | 6차 (10%)   |                     |             |             |
|       |  |        |        |        |             |             |            |             | 계약 시       | 2024.02.06 | 2024.06.18 | 2024.11.18 | 2025.04.18 | 2025.10.17 | 2026.02.19 | 2026.06.18 |                     |             |             |
| 84A   | 101동 1호,2호<br>102동 2호<br>103동 2호,4호<br>104동 1호<br>105동 1호,3호<br>106동 1호,2호,3호<br>107동 1호,2호,4호<br>108동 1호,2호,4호,5호 | 415    | 1층     | 7      | 86,169,600  | 321,830,400 | -          | 408,000,000 | 10,000,000 | 30,800,000 | 40,800,000 | 40,800,000 | 40,800,000 | 40,800,000 | 40,800,000 | 40,800,000 | 40,800,000          | 122,400,000 |             |
|       |  |        | 2층     | 18     | 89,548,800  | 334,451,200 | -          | 424,000,000 | 10,000,000 | 32,400,000 | 42,400,000 | 42,400,000 | 42,400,000 | 42,400,000 | 42,400,000 | 42,400,000 | 42,400,000          | 42,400,000  | 127,200,000 |
|       |  |        | 3~4층   | 36     | 90,604,800  | 338,395,200 | -          | 429,000,000 | 10,000,000 | 32,900,000 | 42,900,000 | 42,900,000 | 42,900,000 | 42,900,000 | 42,900,000 | 42,900,000 | 42,900,000          | 42,900,000  | 128,700,000 |
|       |  |        | 5~9층   | 90     | 91,238,400  | 340,761,600 | -          | 432,000,000 | 10,000,000 | 33,200,000 | 43,200,000 | 43,200,000 | 43,200,000 | 43,200,000 | 43,200,000 | 43,200,000 | 43,200,000          | 43,200,000  | 129,600,000 |
|       |  |        | 10~19층 | 180    | 91,872,000  | 343,128,000 | -          | 435,000,000 | 10,000,000 | 33,500,000 | 43,500,000 | 43,500,000 | 43,500,000 | 43,500,000 | 43,500,000 | 43,500,000 | 43,500,000          | 43,500,000  | 130,500,000 |
|       |  |        | 20층이상  | 84     | 92,294,400  | 344,705,600 | -          | 437,000,000 | 10,000,000 | 33,700,000 | 43,700,000 | 43,700,000 | 43,700,000 | 43,700,000 | 43,700,000 | 43,700,000 | 43,700,000          | 43,700,000  | 131,100,000 |
| 84B   | 101동 4호<br>108동 3호   | 42     | 1층     | 1      | 86,803,200  | 324,196,800 | -          | 411,000,000 | 10,000,000 | 31,100,000 | 41,100,000 | 41,100,000 | 41,100,000 | 41,100,000 | 41,100,000 | 41,100,000 | 41,100,000          | 123,300,000 |             |
|       |  |        | 2층     | 2      | 89,760,000  | 335,240,000 | -          | 425,000,000 | 10,000,000 | 32,500,000 | 42,500,000 | 42,500,000 | 42,500,000 | 42,500,000 | 42,500,000 | 42,500,000 | 42,500,000          | 127,500,000 |             |
|       |  |        | 3~4층   | 4      | 90,816,000  | 339,184,000 | -          | 430,000,000 | 10,000,000 | 33,000,000 | 43,000,000 | 43,000,000 | 43,000,000 | 43,000,000 | 43,000,000 | 43,000,000 | 43,000,000          | 129,000,000 |             |
|       |  |        | 5~9층   | 10     | 91,449,600  | 341,550,400 | -          | 433,000,000 | 10,000,000 | 33,300,000 | 43,300,000 | 43,300,000 | 43,300,000 | 43,300,000 | 43,300,000 | 43,300,000 | 43,300,000          | 43,300,000  | 129,900,000 |
|       |  |        | 10~19층 | 20     | 92,083,200  | 343,916,800 | -          | 436,000,000 | 10,000,000 | 33,600,000 | 43,600,000 | 43,600,000 | 43,600,000 | 43,600,000 | 43,600,000 | 43,600,000 | 43,600,000          | 43,600,000  | 130,800,000 |
|       |  |        | 20층이상  | 5      | 92,505,600  | 345,494,400 | -          | 438,000,000 | 10,000,000 | 33,800,000 | 43,800,000 | 43,800,000 | 43,800,000 | 43,800,000 | 43,800,000 | 43,800,000 | 43,800,000          | 43,800,000  | 131,400,000 |
| 84C   | 101동 3호<br>102동 3호<br>103동 3호<br>104동 2호<br>105동 2호<br>106동 4호<br>107동 3호  | 166    | 1층     | 7      | 85,747,200  | 320,252,800 | -          | 406,000,000 | 10,000,000 | 30,600,000 | 40,600,000 | 40,600,000 | 40,600,000 | 40,600,000 | 40,600,000 | 40,600,000 | 40,600,000          | 121,800,000 |             |
|       |  |        | 2층     | 7      | 88,915,200  | 332,084,800 | -          | 421,000,000 | 10,000,000 | 32,100,000 | 42,100,000 | 42,100,000 | 42,100,000 | 42,100,000 | 42,100,000 | 42,100,000 | 42,100,000          | 126,300,000 |             |
|       |  |        | 3~4층   | 14     | 89,971,200  | 336,028,800 | -          | 426,000,000 | 10,000,000 | 32,600,000 | 42,600,000 | 42,600,000 | 42,600,000 | 42,600,000 | 42,600,000 | 42,600,000 | 42,600,000          | 127,800,000 |             |
|       |  |        | 5~9층   | 35     | 90,604,800  | 338,395,200 | -          | 429,000,000 | 10,000,000 | 32,900,000 | 42,900,000 | 42,900,000 | 42,900,000 | 42,900,000 | 42,900,000 | 42,900,000 | 42,900,000          | 42,900,000  | 128,700,000 |
|       |  |        | 10~19층 | 69     | 91,238,400  | 340,761,600 | -          | 432,000,000 | 10,000,000 | 33,200,000 | 43,200,000 | 43,200,000 | 43,200,000 | 43,200,000 | 43,200,000 | 43,200,000 | 43,200,000          | 43,200,000  | 129,600,000 |
|       |  |        | 20층이상  | 34     | 91,660,800  | 342,339,200 | -          | 434,000,000 | 10,000,000 | 33,400,000 | 43,400,000 | 43,400,000 | 43,400,000 | 43,400,000 | 43,400,000 | 43,400,000 | 43,400,000          | 43,400,000  | 130,200,000 |
| 102   | 102동 4호<br>104동 3호<br>105동 4호  | 67     | 2층     | 3      | 99,544,907  | 372,231,903 | 37,223,190 | 509,000,000 | 10,000,000 | 40,900,000 | 50,900,000 | 50,900,000 | 50,900,000 | 50,900,000 | 50,900,000 | 50,900,000 | 50,900,000          | 152,700,000 |             |
|       |  |        | 3~4층   | 6      | 100,522,755 | 375,888,405 | 37,588,840 | 514,000,000 | 10,000,000 | 41,400,000 | 51,400,000 | 51,400,000 | 51,400,000 | 51,400,000 | 51,400,000 | 51,400,000 | 51,400,000          | 154,200,000 |             |
|       |  |        | 5~9층   | 15     | 101,305,033 | 378,813,606 | 37,881,361 | 518,000,000 | 10,000,000 | 41,800,000 | 51,800,000 | 51,800,000 | 51,800,000 | 51,800,000 | 51,800,000 | 51,800,000 | 51,800,000          | 51,800,000  | 155,400,000 |
|       |  |        | 10~19층 | 30     | 102,087,311 | 381,738,808 | 38,173,881 | 522,000,000 | 10,000,000 | 42,200,000 | 52,200,000 | 52,200,000 | 52,200,000 | 52,200,000 | 52,200,000 | 52,200,000 | 52,200,000          | 52,200,000  | 156,600,000 |
|       |  |        | 20층이상  | 13     | 102,674,020 | 383,932,709 | 38,393,271 | 525,000,000 | 10,000,000 | 42,500,000 | 52,500,000 | 52,500,000 | 52,500,000 | 52,500,000 | 52,500,000 | 52,500,000 | 52,500,000          | 52,500,000  | 157,500,000 |
| 117   | 102동 1호<br>103동 1호<br>106동 5호  | 73     | 1층     | 3      | 109,127,816 | 408,065,622 | 40,806,562 | 558,000,000 | 10,000,000 | 45,800,000 | 55,800,000 | 55,800,000 | 55,800,000 | 55,800,000 | 55,800,000 | 55,800,000 | 55,800,000          | 167,400,000 |             |
|       |  |        | 2층     | 3      | 113,039,207 | 422,691,630 | 42,269,163 | 578,000,000 | 10,000,000 | 47,800,000 | 57,800,000 | 57,800,000 | 57,800,000 | 57,800,000 | 57,800,000 | 57,800,000 | 57,800,000          | 173,400,000 |             |
|       |  |        | 3~4층   | 6      | 114,408,194 | 427,810,733 | 42,781,073 | 585,000,000 | 10,000,000 | 48,500,000 | 58,500,000 | 58,500,000 | 58,500,000 | 58,500,000 | 58,500,000 | 58,500,000 | 58,500,000          | 175,500,000 |             |

| 약식<br>표기 | 동별 | 공급<br>세대수 | 층<br>구분 | 해당<br>세대수 | 공급금액        |             |            |             | 계약금 (10%)  |            | 중도금 (60%)  |            |            |            |            |            | 잔금 (30%)<br>입주지정<br>기간 |
|----------|----|-----------|---------|-----------|-------------|-------------|------------|-------------|------------|------------|------------|------------|------------|------------|------------|------------|------------------------|
|          |    |           |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세        | 계           | 1차         | 2차         | 1차 (10%)   | 2차 (10%)   | 3차 (10%)   | 4차 (10%)   | 5차 (10%)   | 6차 (10%)   |                        |
|          |    |           |         |           |             |             |            |             | 계약 시       | 2024.02.06 | 2024.06.18 | 2024.11.18 | 2025.04.18 | 2025.10.17 | 2026.02.19 | 2026.06.18 |                        |
|          |    |           | 5~9층    | 15        | 115,386,041 | 431,467,235 | 43,146,724 | 590,000,000 | 10,000,000 | 49,000,000 | 59,000,000 | 59,000,000 | 59,000,000 | 59,000,000 | 59,000,000 | 59,000,000 | 177,000,000            |
|          |    |           | 10~19층  | 30        | 116,363,889 | 435,123,737 | 43,512,374 | 595,000,000 | 10,000,000 | 49,500,000 | 59,500,000 | 59,500,000 | 59,500,000 | 59,500,000 | 59,500,000 | 59,500,000 | 178,500,000            |
|          |    |           | 20층이상   | 16        | 117,146,167 | 438,048,939 | 43,804,894 | 599,000,000 | 10,000,000 | 49,900,000 | 59,900,000 | 59,900,000 | 59,900,000 | 59,900,000 | 59,900,000 | 59,900,000 | 179,700,000            |

- 공통사항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주택형별', '층별' 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확장 비용, 추가 선택품목(플러스옵션, 가전옵션 등) 비용이 미포함 되었으며, 주택 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실, 경비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실, 경비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상가 대지지분을 제외한 아파트 대지지분에 대한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해당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또한,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연체료가 발생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중도금 대출 조건은 무이자 적용이며, 중도금 대출을 원할 시 수분양자가 공급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능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에는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으며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시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 구분          |                       | 84A | 84B | 84C | 102 | 117 | 합계  |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장애인(영주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 17  | 2   | 6   | -   | -   | 25  |
|             | 국가유공자                 | 9   | 1   | 4   | -   | -   | 14  |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3   | -   | 1   | -   | -   | 4   |
|             | 중소기업 근로자              | 8   | 1   | 3   | -   | -   | 12  |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4   | -   | 2   | -   | -   | 6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41  | 4   | 16  | 6   | 7   | 74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74  | 7   | 29  | -   | -   | 110 |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 12  | 1   | 4   | 2   | 2   | 21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37  | 3   | 14  | -   | -   | 54  |
| 합계          |                       | 205 | 19  | 79  | 8   | 9   | 320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공통사항

| 구분                      | 내용  |
|-------------------------|---|
| 1회 한정/<br>자격요건/<br>자격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li>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li> </ul>   |
| 무주택 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제한</li> <li>-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 <li>-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li> <li>※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li> </ul> </li> </ul> |



|              | <p>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p> <p>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p> <p>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p> <p>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p>  |                         |                                      |                         |             |             |          |          |          |              |          |          |          |              |          |          |            |       |          |            |
|--------------|---|-------------------------|--------------------------------------|-------------------------|-------------|-------------|----------|----------|----------|--------------|----------|----------|----------|--------------|----------|----------|------------|-------|----------|------------|
| 청약자격<br>요건   |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p> <p>-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p> <p>-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p>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p> |                         |                                      |                         |             |             |          |          |          |              |          |          |          |              |          |          |            |       |          |            |
|              | <p style="text-align: center;"><b>【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b></p> <table border="1"> <thead> <tr> <th>[입주자저축 예치금액]</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br/>(영주시, 경상북도 거주자)</th> <th>그 밖의 광역시<br/>(대구광역시 거주자)</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200만원 이상</td> <td>250만원 이상</td> <td>300만원 이상</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300만원 이상</td> <td>400만원 이상</td> <td>600만원 이상</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400만원 이상</td> <td>700만원 이상</td> <td>1,000만원 이상</td> </tr> <tr> <td>모든 면적</td> <td>500만원 이상</td> <td>1,000만원 이상</td> <td>1,500만원 이상</td> </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p>  |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br>(영주시, 경상북도 거주자) | 그 밖의 광역시<br>(대구광역시 거주자)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전용면적 85㎡ 이하 | 200만원 이상 | 250만원 이상 | 300만원 이상 | 전용면적 102㎡ 이하 | 300만원 이상 | 400만원 이상 | 600만원 이상 | 전용면적 135㎡ 이하 | 400만원 이상 | 700만원 이상 | 1,000만원 이상 | 모든 면적 |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이상 |
|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br>(영주시, 경상북도 거주자)  | 그 밖의 광역시<br>(대구광역시 거주자)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85㎡ 이하  | 200만원 이상  | 250만원 이상                | 300만원 이상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102㎡ 이하 | 300만원 이상  | 400만원 이상                | 600만원 이상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135㎡ 이하 | 400만원 이상  | 700만원 이상                | 1,000만원 이상                           |                         |             |             |          |          |          |              |          |          |          |              |          |          |            |       |          |            |
| 모든 면적        |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이상                           |                         |             |             |          |          |          |              |          |          |          |              |          |          |            |       |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61세대]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 추천기관

| 구분         | 해당기관                                     | 청약통장 구비여부              |
|------------|--|------------------------|
| 장애인        | 영주시청 노인장애인과, 경상북도청 장애인복지과, 대구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청약통장 필요 없음             |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 경북북부보훈지청 복지과                       | 청약통장 필요 없음             |
| 장기복무제대군인   | 국가보훈처 경북북부보훈지청 복지과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
| 10년이상 복무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
| 중소기업 근로자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8% 범위 [110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영주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                                     |  |
|---------------------------|-------------------------------------|--|
| 입주자모집공고일<br>07.01 ~ 12.31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br>(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br>(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영주시)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영주시) 거주자한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2023년 적용**

| 공급유형   |                     | 구분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3년 적용) |                            |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소득<br>기준<br>구분   | 우선공급<br>(기준소득, 50%)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이하                                | ~6,509,452원                | ~7,622,056원                | ~8,040,492원                | ~8,701,639원                 | ~9,362,786원                 | ~10,023,933원                |
|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0%초과~120% 이하                         | 6,509,453원~<br>7,811,342원  | 7,622,057원~<br>9,146,467원  | 8,040,493원~<br>9,648,590원  | 8,701,640원~<br>10,441,967원  | 9,362,787원~<br>11,235,343원  | 10,023,934원~<br>12,028,720원 |
|  | 일반공급<br>(상위소득, 20%)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초과~140%이하                          | 6,509,453원~<br>9,113,233원  | 7,622,057원~<br>10,670,878원 | 8,040,493원~<br>11,256,689원 | 8,701,640원~<br>12,182,295원  | 9,362,787원~<br>13,107,900원  | 10,023,934원~<br>14,033,506원 |
|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초과~160%이하                          | 7,811,343원~<br>10,415,123원 | 9,146,468원~<br>12,195,290원 | 9,648,591원~<br>12,864,787원 | 10,441,968원~<br>13,922,622원 | 11,235,344원~<br>14,980,458원 | 12,028,721원~<br>16,038,293원 |
|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br>(추첨제, 30%)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140%초과,<br>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 9,113,234원~                            | 10,670,879원~               | 11,256,690원~               | 12,182,296원~               | 13,107,901원~                | 14,033,507원~                |                             |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60%초과,<br>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 10,415,124원~                           | 12,195,291원~               | 12,864,788원~               | 13,922,623원~               | 14,980,459원~                | 16,038,294원~                |                             |
| <p>-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p> <p>-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p> <p>- 추첨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p> |                     |                             |  |                            |                            |                            |                             |                             |                             |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원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자산보유기준**

| 구분             | 자산보유기준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            |  |            |    |                    |               |      |                                  |      |  |                 |
|----------------|--|----------------------------------|--|------------|--|------------|----|--------------------|---------------|------|----------------------------------|------|--|-----------------|
| 부동산<br>(건물+토지) | 3억3,100만원 이하   | 건축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    |                    |               |      |                                  |      |  |                 |
|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            |  |            |    |                    |               |      |                                  |      |  |                 |
|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  |            |    |                    |               |      |                                  |      |  |                 |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    |                    |               |      |                                  |      |  |                 |
| 토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ul> </li> <li>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                                  |  |            |  |            |    |                    |               |      |                                  |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  |  |
|--|--|
| 군복무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청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   |
| 청약자의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 기타 본 입주자 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74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영주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영주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 비고   |
|----------------|-----|----------------|----|--|
|                |     | 기준             | 점수 |  |
| 계              | 100 |                |    |  |
| 미성년 자녀수(1)     | 40  |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                |     | 미성년 자녀 4명      | 35 |  |
|                |     | 미성년 자녀 3명      | 30 |  |
| 영유아 자녀수(2)     | 15  |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                |     | 자녀 중 영유아 2명    | 10 |  |
|                |     | 자녀 중 영유아 1명    | 5  |  |
| 세대구성(3)        | 5   | 3세대 이상         |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                |     | 한부모 가족         | 5  |  |
| 무주택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 15  | 10년 이상         |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경상북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세대수의 3% 범위 [21세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영주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기준**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영주시)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9% 범위 [54세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영주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
|---------------|------------------|-----------------------|
| 07.01 ~ 12.31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2023년 적용**

| 공급유형       | 구분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소득기준 기본    |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 130% 이하                     | ~8,462,288원                | ~9,908,673원                | ~10,452,640원                | ~11,312,131원                | ~12,171,622원                | ~13,031,113원                |
|            |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 130% 초과~160% 이하             | 8,462,289원~<br>10,415,123원 | 9,908,674원~<br>12,195,290원 | 10,452,641원~<br>12,864,787원 | 11,312,132원~<br>13,922,622원 | 12,171,623원~<br>14,980,458원 | 13,031,114원~<br>16,038,293원 |
| 추첨공급 (30%) |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 160%초과,<br>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 10,415,124원~               | 12,195,291원~               | 12,864,788원~                | 13,922,623원~                | 14,980,459원~                | 16,038,294원~                |
|            |                   | 160%이하                      | ~10,415,123원               | ~12,195,290원               | ~12,864,787원                | ~13,922,622원                | ~14,980,458원                | ~16,038,293원                |
|            | 1인 가구             | 160%초과,<br>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 10,415,124원~               | 12,195,291원~               | 12,864,788원~                | 13,922,623원~                | 14,980,459원~                | 16,038,294원~                |
|            |                   | 160%이하                      | ~10,415,123원               | ~12,195,290원               | ~12,864,787원                | ~13,922,622원                | ~14,980,458원                | ~16,038,293원                |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자산보유 기준**

| 구분             | 자산보유기준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            |            |     |                    |               |      |                                  |      |  |                 |
|----------------|--------------------|--|--------|------------|------------|-----|--------------------|---------------|------|----------------------------------|------|--|-----------------|
| 부동산<br>(건물+토지) | 3억3,100만원<br>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able>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주 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                    |               |      |                                  |      |  |                 |
| 주 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            |            |     |                    |               |      |                                  |      |  |                 |
|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            |     |                    |               |      |                                  |      |  |                 |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li> <li>-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ul> |        |            |            |     |                    |               |      |                                  |      |  |                 |

###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영주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별표3)

|  |  |
|--|--|
| 군복무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   |
| 청약자의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 III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구분        | 내용  |
|-----------|---|
| 신청자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신청자격</b>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영주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 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li> </ul>  |
| 청약신청 유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li> <li>-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li> <li>-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li> <li>-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li> <li>-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li> </ul> |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 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2]

| [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 |                                      |                         |             |
|----------------|--------------------------------------|-------------------------|-------------|
| 구분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br>(영주시, 경상북도 거주자) | 그 밖의 광역시<br>(대구광역시 거주자)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 전용면적 85㎡ 이하    | 200만원 이상                             | 250만원 이상                | 300만원 이상    |
| 전용면적 102㎡ 이하   | 300만원 이상                             | 400만원 이상                | 600만원 이상    |
| 전용면적 135㎡ 이하   | 400만원 이상                             | 700만원 이상                | 1,000만원 이상  |
| 모든 면적          |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이상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 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 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규모 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 - 주택규모 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에 따라 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가입 기간 및 예치금(잔액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순위 산정은 현행과 동일함)
-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 구분   | 순위  | 주택형                  | 청약관련 신청자격  |
|------|-----|----------------------|--|
| 민영주택 | 1순위 | 전용<br>60㎡초과<br>85㎡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됨.</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ol> </li> </ul> |
|      |     | 전용<br>85㎡초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 (100%) 적용</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ol> </li> </ul>   |
|      | 2순위 | 전 주택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li> </ul>  |

## IV 청약신청 일정, 장소 및 구비서류

### 청약신청 일정 및 장소

| 구분   | 신청 대상자                          | 신청 일시   |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
|------|---------------------------------|---|---|---|
| 특별공급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자, 생애최초 | 2023.12.18.(월)<br>(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br>(사업주체 건본주택 : 10:00~14:00)<br>※ 건본주택 방문 접수는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만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li> <li>-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li> <li>• 사업주체 건본주택(영주시 가흥동764-1)</li> </ul> |
|      |                                 | <table border="1"> <tr> <td>1순위</td> <td>2023.12.19.(화) 09:00~17:30</td> </tr> <tr> <td>2순위</td> <td>2023.12.20.(수) 09:00~17:30</td> </tr> </table> |   |   |
| 1순위  | 2023.12.19.(화) 09:00~17:30      |   |   |   |
| 2순위  | 2023.12.20.(수) 09:00~17:30      |   |   |   |
| 일반공급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li> <li>-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li> <li>•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li> </ul>            |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또는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
|---|--|
| <b>[PC 청약시]</b>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 <b>[스마트폰 청약시]</b>   |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  |
|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br>·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 ②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br>· 「청약신청」⇒「APT청약신청」⇒「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단,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 ③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br>·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br>· 청약연습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 구 분   | 구비사항   |   |         |           |   |
|---|--|---|---------|-----------|---|
| 일반<br>공급  | 본인 신청 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li> <li>·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li> </ul>  |         |           |   |
|   | 제3자 대리신청 시<br>추가사항<br>(배우자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br/>※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br/>※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td> </tr> </tbody> </table>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br/>※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br/>※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br/>※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         |           |   |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 구 분                   | 내 용   |
|-----------------------|---|
|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br>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br>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br>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br>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br>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br>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br>- 외국인 직계존속<br>-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br>※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br>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한다.<br>-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br>-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br>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br>-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br>-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확인할 서류 등  |
|---------------|------|---------------------|----|-----------------|----|---|
| ① 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li> <li>■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li> <li>■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li> <li>※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li> </ul> |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    |   |

|                          |    |                |    |                 |    |   |
|--------------------------|----|----------------|----|-----------------|----|---|
| ②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초본</li> <li>■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li> <li>■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li> <li>(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li> </ul> </li> </ul> |
|                          |    | 1명             | 10 | 5명              | 30 |   |
|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                          |    | 3명             | 20 |                 |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li> </ul>   |
|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
| ※ 본인 청약기점 점수 = ① + ② + ③ |    |                |    |                 |    |   |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 구분                         | 선정 방법   |
|----------------------------|---|
| <b>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li> <li>•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li> </ul>  |
| <b>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가점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적용</li> <li>-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li> </ul> </li> <li>•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영주시 거주신청자가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li> <li>•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li> <li>•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li> <li>•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li> </ul> </li> <li>-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li> </ul> </li> <li>•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li> </ul> |

|      |   |
|------|---|
| 유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li> <li>•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li> <li>•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li> <li>•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li> <li>•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li> <li>•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합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b>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b></li> </ul> |
|------|---|

## V 당첨자 발표 계약일정

###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 구 분  | 신청대상자                                 |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계약체결  |
|------|---------------------------------------|--|---|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br>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2023.12.27.(수)</li> <li>•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li> <li>또는 스마트폰에서 개별조회</li> <li>*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01.07.(일) ~ 2024.01.09.(화) (10:00~16:00)</li> </ul> </li> <li>•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 견본주택 (장소 : 영주시 가흥동 764-1)</li> </ul> </li> </ul> |
| 일반공급 | 1순위<br><br>2순위                        |  |   |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를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를 통해 반드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
|-----------|------|--|
| 이용기간      |      | 2023.12.27.(수) ~ 2024.01.05.(금) (10일간)   |
| 인터넷       |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br>-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br>※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 휴대폰 문자서비스 | 대상   | <b>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b>  |
|           | 제공일시 | 2023.12.27.(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및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 VI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검증 서류제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 내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 구분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 서류제출장소                  | 비고                           |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 2023.12.29.(금) ~ 2024.01.01.(월) <b>(4일간)</b><br>10:00 ~ 16:00 | 건본주택<br>(영주시 가흥동 764-1) |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 일정은<br>별도 공지 예정 |

### 공통 유의사항

-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및 방법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간[2023.12.29.(금) ~ 2024.01.01.(월)] 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 해야하며, 상기 서류제출 일정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단, 정당 당첨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자격검증 서류제출 방문 및 계약체결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예약제'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영주자가 시그니처 홈페이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예비 입주자는 예비 순번 순으로 서류제출 기간을 따로 정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동호 추천 및 계약일정 등은 추후 영주자가 시그니처 홈페이지에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 ※ 계약체결 이전 사전 서류제출기간 내에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분리세대 등 확인)
-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2.06.(수)]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주민등록표등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당첨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 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 청약자에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자격검증 서류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위반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당첨자 제출 서류 (특별공급,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포함)**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공통서류<br>(기관추천<br>특별공급<br>포함)                                | ○    |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   | ○    |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주소변동 사항 제외)   |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하여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 혼인신고일 확인  |
|   | ○    |             | 출입국 관한 사실증명  |  |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                                    |
|   |      | ○           | 복무확인서  |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10년 이상 군복무기간 명시) |   |
|   |      | ○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 배우자  |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br>■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등재된 경우 |  |   |
| ※ 계약 구비서류(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는 접수 및 보관하지 않습니다. 계약체결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다자녀<br>특별<br>공급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피부양<br>직계존속                                    | ■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   |      | ○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 주택공급신청자가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   |      | ○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 또는  |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br>(해당자) |                       |                   |   |
|              |      |             |                       |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담당 의사명,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 및 직인 날인 원본)</li> </ul>  |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li> </ul>   |
| 신혼부부<br>특별공급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전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FAX 수신 문서 가능)</li> </ul>  |
|              | ○    |             | 소득증빙서류                |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전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li> <li>■ 아래 소득증빙서류 참고 ※ FAX 수신문서 등 복사본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li> </ul>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li> </ul>  |
|              |      | ○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li> <li>※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담당 의사명,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 및 직인 날인 원본)</li> </ul>   |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li> </ul>   |
|              |      | ○           | 부동산 소유현황              |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li> <li>■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li> <li>※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 체크</li> <li>■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아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제출</li> </ul> |
| 생애최초<br>특별공급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전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FAX 수신 문서 가능)</li> </ul>  |
|              | ○    |             | 소득증빙서류                |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전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li> <li>■ 아래 소득증빙서류 참고 ※ FAX 수신문서 등 복사본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li> </ul>  |
|              | ○    |             |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주 본인의 자격 및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아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참고)</li> </ul>   |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피부양 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산정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li> </ul>  |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비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18세 이상의 미혼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ul>   |
|              |      |             | ○                     | 부동산 소유현황          | 본인 및 세대원  |
| 노부모<br>부양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피부양 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3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li> </ul>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 확인 및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li> </ul>  |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br>(해당자) |                        |             |  |
| 특별공급          | ○    |             | 출입국 관한 사실증명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li> <li>■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li> </ul>   |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피부양<br>직계비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li> <li>■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li> </ul>  |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li> </ul>  |
|               |      | ○           | 출입국 관한 사실증명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li> <li>■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li> <li>■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li> </ul>   |
|               |      |             |                        |             |  |
| 일반공급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피부양<br>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3년이상 부양)</li> <li>■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3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li> </ul>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li> <li>■ 관계 확인 및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li> </ul>  |
|               |      | ○           | 출입국 관한 사실증명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li> <li>■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li> <li>■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li> </ul>  |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li> <li>■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li> </ul>  |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li> </ul>  |
|               |      | ○           | 출입국 관한 사실증명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li> <li>■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li> <li>■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li> </ul>   |
| 부적격<br>통보 받은자 |      | ○           | 주택 및 분양권등<br>소유여부 증명서류 | 해당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주택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li> <li>■ 무허가 주택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li> <li>■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li> </ul>   |
|               |      | ○           | 당첨사실 소명 서류             | 해당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li> </ul>   |
|               |      | ○           | 단신부임 입증 서류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li> <li>■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li> <li>■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비자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li> <li>※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시 생업사정 불인정</li> </ul> |
|               |      |             | 출입국 관한                 |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li> </ul>  |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      |          | 사실증명           | 세대원  |   |
|                  |      |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 해당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li> <li>※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미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li> </ul>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아파트 서류접수 위임용)</li> </ul>  |
|                  | ○    |          | 신분증, 도장        | 대리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li> </ul>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2.06.(수))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기 및 "주소변동이력" 포함을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 해당자격 |                       | 소득입증 제출자료  | 발급처                  |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br>※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br>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br>※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 신고납부 대상자 확인'으로 발급)<br>※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 ①해당직장<br>②세무서        |
|      |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br>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br>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명<br>④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br>※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 동일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 소득을 추정                                    | ①,②,③해당직장<br>④국민연금공단 |
|      | 전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br>②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 해당직장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자 |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 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br>※ 근로계약서 및 월별 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해당직장                 |

|              |   |   |                      |
|--------------|---|---|----------------------|
|              | (학원강사,보육교사등)  |   |                      |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br>면세사업자   |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br>② 사업자등록증명                | 세무서(홈텍스)             |
|              | 법인사업자   |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br>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        | ①세무서(홈텍스)<br>②등기소    |
|              | 신규사업자   | ①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br>② 사업자등록증 | ①국민연금공단<br>②세무서(홈텍스)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금액증명 또는 해당회사의 급여명세표<br>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①해당직장/세무서<br>②해당직장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                      |
| 비정규직, 일용직근로자 |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 급여명세표(근로소득 지급조서)<br>※ 근로계약서 및 월별 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br>② ①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①해당직장<br>②국민연금공단                                    |                      |
| 무직자          | ① 비사업자확인각서(※건분주택에 비치)<br>②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br>※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 ①건분주택<br>②세무서                                       |                      |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중에 휴직을 했던 분은 휴직 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예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제출한 서류에 대해 위변조 검증을 실시하며, 제출서류의 위변조 확인 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서류 외 소득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 해당여부         | 서류구분                 | 확인자격  | 증빙 제출서류  | 발급처                       |
|--------------|----------------------|---|--|---------------------------|
| 생애최초<br>특별공급 | 자격<br>입증서류           |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br>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① 해당직장/세무서<br>② 건강보험공단    |
|              |                      | 자영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명<br>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br>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br>(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br>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 5개 년도<br>소득세<br>입증서류 |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br>① 소득금액증명원 및 납부내역증명 (종합소득세납부자)<br>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br>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 ① 세무서<br>② 해당직장<br>③ 해당직장 |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 상기 서류 외 자격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건물의 용도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등본 등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용 주택도 주택으로 봅니다.
-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에 포함. 또한, 가정 아파트·어린이집 등도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 분양권·입주권은 공급규칙 시행일(2018.12.11.) 이후에 입주자모집·관리처분계획·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되어 보유한 경우 주택으로 인정되며 시행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며, 주택면적은 지분 비율만큼이 아니라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 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이 수도권 1억 6천만원(비수도권 1억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소형·저가주택등' 보유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공시가격 적용 기준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 ③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Ⅶ 계약체결**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구 분       | 계약기간   | 계약장소  |
|-----------|--|---|
| 당첨자 계약 체결 | 2024.01.07.(일)~2024.01.09.(화) <b>3일간 (10:00 ~ 16:00)</b> | <p><b>영주자이 시그니처 견본주택 (영주시 가흥동 764-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계약체결 시 방문 예약은 “영주자이 시그니처” 인터넷 홈페이지(<a href="http://xi.co.kr/yjs">http://xi.co.kr/yjs</a>) 방문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li> <li>- 당첨자의 예약 방문일자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li> </ul> |

-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여야합니다. (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공급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1차 계약금          | 하나은행 | 231-910047-27004 | (주)하나자산신탁 |
|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      | 세대별 가상계좌         | 동·호수      |

- 상기 계좌는 공급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서, 2차 계약금 및 중도금부터는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상기 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개인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공급대금 중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계약금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부터는 계약체결 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건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201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확인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br>(해당자)            |  |      |   |
| 본인 계약 시 | ○    |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확인증</li> <li>■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li> <li>■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용) ※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li> <li>■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외</li> <li>■ 접수 장소에 비치</li> <li>■ 분양가(유상옵션 포함) 6억원 이상 세대에 한 함 / 홈페이지 서식 게시 / 접수 장소에 비치</li> </ul>   |
|         | ○    |                        | 신분증  |      |   |
|         | ○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
|         | ○    |                        | 인감도장   |      |   |
|         | ○    |                        | 부동산 실거래신고서   |      |   |
|         | ○    |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   |
|         | ○    |                        | 인지세 납부 증명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발급 후 사본 제출</li> <li>■ 수입인지 세액 : 1억원 이상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시 35만원<br/>※ 분양가, 발코니 확장금액,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금액의 총합계 기준</li> <li>■ 수입인지 구입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프라인 : 우체국·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li> <li>-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li> </ul> </li> </ul> |
|         | ○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li> </ul> |      |   |
|         | ○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일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li> </ul> |      |   |

|                 |   |             |                |   |
|-----------------|---|-------------|----------------|---|
| 대리인 신청시<br>추가사항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당첨자<br>(청약신청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도 : 주택공급 신청 위임용 또는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발급분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은 대리불가)</li> </ul> |
|                 | ○ | 위임장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본주택 비치</li> </ul>   |
|                 | ○ | 신분증, 도장     | 대리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li> </ul>              |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2.06.(수))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분실했을 경우 가산세가 최고 300%까지 발생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
- ※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단,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2022.12.31. 개정된 「인지세법」제8조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5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 입주자로 선정(2순위 당첨자 포함)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계약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 당첨 이후 주소 및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 된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명으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관련 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됩니다.
-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 청약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 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다른 일정



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 청약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합니다.
  - (1)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3)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4)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영주자이 시그니처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 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무순위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 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시 무이자(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조건으로 용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총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지정하는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금융권의 규제 등으로 인하여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격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중도금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등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계약자는 계약금 납부 이후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계법령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담보대출 유무,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주택 소유 등)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발생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을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분양사무소는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은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기준으로 안내하는 것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정부정책 또는 금융기관의 대출취급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지 못할 경우 분양대금을 계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조달하여 납부조건에 따라 각 납부 회차별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알선은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지정하는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발생하는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대납하기로 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수분양자)가 직접 해당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선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은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선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금 납입예정일은 조정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며 중도금 납입일 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대납한 이자 전액을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대출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공급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는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 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공급대금 미납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 협약 등에 의거하여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VIII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공급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구분        |            | 84A        | 84B        | 84C        | 102        | 117        |
|-----------|------------|------------|------------|------------|------------|------------|
| 공급금액      |            | 10,000,000 | 11,000,000 | 10,000,000 | 13,000,000 | 16,000,000 |
| 계약금 (10%) | 계약 시       | 1,000,000  | 1,100,000  | 1,000,000  | 1,300,000  | 1,600,000  |
| 중도금 (10%) | 2024.06.18 | 1,000,000  | 1,100,000  | 1,000,000  | 1,300,000  | 1,600,000  |
| 잔금 (80%)  | 입주지정일      | 8,000,000  | 8,800,000  | 8,000,000  | 10,400,000 | 12,800,000 |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명      |
|---------|------|------------------|-----------|
| 계약금     | 하나은행 | 231-910047-29204 | (주)하나자산신탁 |
| 중도금, 잔금 |      | 세대별 가상계좌         | 동·호수      |

- **상기 발코니 확장 공급대금 납부계좌는 아파트 및 플러스옵션 공급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201홍길동')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점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급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서, 중도금부터는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상기 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개인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약 1개월)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택하여 계약하는 별도 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확장 공간 제외 발코니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부위 표기의 '거실', '침실1' 등의 표현은 카탈로그 기준이며, 계약관련 선택사항 및 유의사항을 계약자가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자재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발코니 확장 계약 가능 기한 이후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 및 전시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공간이 협소하고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어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계되었으며, 사용승인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및 우천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창호, 단열재 및 마감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확장면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해당공간은 결로 방지용 단열재가 설치되나 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발코니 확장 시에는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의 단열 및 결로 방지를 위하여 확장부위 일부 벽체 및 천장이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천장 및 벽체 돌출,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본형 세대(비 확장형 세대) 선택 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 및 추가 선택품목(플러스옵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관련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가 선택품목 (플러스옵션) ※ 플러스옵션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 가능**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구분            | 내용  | 공급금액       |            |            |            |            |
|---------------|---|------------|------------|------------|------------|------------|
|               |   | 84A        | 84B        | 84C        | 102        | 117        |
| 마감 Style up   | - 현관, 복도, 주방, 거실 벽 : 유럽산 포셀린타일 및 시트 패널<br>- 거실 우물천장내 건축화조명 및 천장시트패널, 거실/복도 단천장 및 리니어조명, 침실/현관 특화조명, 신발장 하부간접조명                        | 9,500,000  | 9,600,000  | 9,100,000  | 10,500,000 | 12,000,000 |
| 주방 Style up   | - Layout 변경 (공간옵션형)<br>- Arredo 3 주방가구(일부)<br>- 세라믹패널 주방 상판<br>- 독립형 렌지후드<br>- 주방 우물천장+간접조명, 루버천장, 특화조명<br>- 특화수전, 주방 TV(13인치) 3구 인덕션 | 21,500,000 | 21,500,000 | 17,500,000 | 23,000,000 | 22,000,000 |
| 마스터존 Style up | - 베타공간 : 드레스룸 + 화장대 + 수납장, 침실2 도어 : 2 슬라이딩 도어 (침실1 도어 위치 변경)  |            |            |            |            | 5,300,000  |
| 패키지           | 마감 Style up + 주방 Style up   | 29,200,000 | 29,300,000 | 25,300,000 | 31,800,000 | 32,300,000 |
|               | 마감 Style up + 마스터존 Style up   |            |            |            |            | 16,400,000 |
|               | 마감 Style up + 주방 Style up + 마스터존 Style up   |            |            |            |            | 36,500,000 |
| 욕실 Style up   | - 벽,바닥 욕조측면 : 유럽산 포셀린타일<br>- Paffoni 수전/도기류, 무광 약세사리 및 샤워부스 프레임<br>- 특화조명, 복합환풍기  | 7,000,000  | 7,000,000  | 7,000,000  | 7,400,000  | 7,400,000  |
| 현관중문          | - 3연동 자동 중문   | 2,000,000  | 2,000,000  | 2,000,000  | 2,000,000  | 2,000,000  |
| 바닥 옵션         | 주방 Style up 선택 시  | 2,700,000  | 2,700,000  | 2,400,000  | 3,200,000  | 3,300,000  |
|               | 주방 Style up 미선택 시   | 2,200,000  | 2,200,000  | 2,400,000  | 2,800,000  | 3,100,000  |
| 침실 불박이장       | - 84A, 84B, 84C, 102 : 침실3 / - 117 : 침실4  | 1,300,000  | 1,300,000  | 1,300,000  | 1,300,000  | 1,500,000  |
| 드레스룸 Style up | - 드레스룸 위치변경 + 포켓도어 + 시트패널벽체 + 간접조명  |            |            | 1,400,000  |            |            |

|               |              |  |  |  |           |  |
|---------------|--------------|--|--|--|-----------|--|
| 베타공간 Style up | - 드레스룸 + 화장대 |  |  |  | 2,800,000 |  |
|---------------|--------------|--|--|--|-----------|--|

### 추가 선택품목 (플러스옵션) 관련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 (플러스옵션)은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형별로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 및 품목, 적용범위가 다르며, 해당 주택형의 품목 및 공급금액이 명기되어 있는 항목만 선택 가능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설치 위치 및 품목, 적용범위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을 확인 후 선택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설치 위치 및 품목은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및 품목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공급금액은 해당 옵션 선택 시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됩니다.
- 카탈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의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플러스옵션) 납부계좌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명    |
|--------------------------|------|------------------|---------|
| 추가 선택품목(플러스옵션) 공급대금 납부계좌 | 기업은행 | 231-910047-26304 | GS건설(주) |

- 분양대금, 발코니 확장, 추가선택품목(플러스옵션) 납부계좌는 서로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개인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이며,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약 1개월)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은 반드시 상기 예금주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천장형 시스템에어컨 - LG전자 Premium UVnano 실내기 ) ※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 가능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약식표기          | 선택 | 설치장소                                  | 공급금액       | 제조사  |
|---------------|----|---------------------------------------|------------|------|
| 84A, 84B, 84C | 2대 | 거실 + 침실1                              | 3,960,000  | LG전자 |
|               | 3대 | 거실 + 침실1 + 침실 1개소                     | 5,450,000  |      |
|               | 4대 |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 7,220,000  |      |
| 84A, 84B      | 5대 |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알파룸            | 8,540,000  |      |
| 102           | 3대 | 거실 + 주방 + 침실1                         | 5,460,000  |      |
|               | 4대 |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 1개소                | 7,230,000  |      |
|               | 5대 |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8,550,000  |      |
|               | 6대 |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알파룸       | 10,120,000 |      |
| 117           | 3대 | 거실 + 주방 + 침실1                         | 5,930,000  |      |
|               | 4대 |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 1개소                | 7,240,000  |      |
|               | 5대 |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 2개소                | 8,820,000  |      |
|               | 6대 |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 10,130,000 |      |
|               | 7대 |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 알파룸 | 11,450,000 |      |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타입별시스템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주택형별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시실외기가 설치되는 구간에 노출 배관이 설치되며, 미관을 해칠 수 있습니다.
- 천장형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실외기실에는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천장형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시 기본으로 설치되는 냉매배관 거실, 안방 2개소는 스탠드형과 벽걸이형으로 시공됩니다.

추가 선택품목 [환기형 공기청정 시스템(시스클라인)] ※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 가능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약식표기               | 선택안 |     | 설치장소                            | 공급금액      | 공급업체      |
|--------------------|-----|-----|---------------------------------|-----------|-----------|
| 84A, 84B, 84C, 102 | 2대  | 선택1 | 거실 + 주방                         | 1,840,000 | 자이에스앤디(주) |
|                    |     | 선택2 | 거실 + 침실1                        | 1,700,000 |           |
|                    | 3대  | 선택3 | 거실 + 주방 + 침실1                   | 2,620,000 |           |
|                    | 5대  | 선택4 |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4,180,000 |           |
| 117                | 2대  | 선택1 | 거실 + 주방                         | 1,840,000 |           |
|                    |     | 선택2 | 거실 + 침실1                        | 1,700,000 |           |
|                    | 3대  | 선택3 | 거실 + 주방 + 침실1                   | 2,620,000 |           |
|                    | 6대  | 선택4 |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 4,960,000 |           |

- 시스클라인은선택 옵션에 따라 세대 내 공기 청정화 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스클라인은한국공기청정협회(CA)에서 지정한 소음 기준에 부합하나 개인별 소음 인지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클라인은천장에 빌트인 형태로 설치되는 제품으로 천장에 설치되는 기타 장애물(스프링클러, 감지기 등)을 고려하여 실시공시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공기청정기 설치 위치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별명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클라인구성품은천장형공기청정기와 리모컨이며 천장형공기청정기 1대당 제어용 리모컨 1대를 제공하오니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선택품목 (주방가전) ※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 가능**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품목        | 모델명                 | 공급금액      | 비고               | 제조사  |
|-----------|---------------------|-----------|------------------|------|
| 빌트인 냉장고   | S715SI24B           | 5,750,000 | 홈바형              | LG전자 |
|           | S695SI34B           | 7,650,000 | 디스펜서형            |      |
| 빌트인 김치냉장고 | K221PR14B           | 1,450,000 | -                |      |
| 오브제 냉장고   | BC4S1AA1 + BC3K1AA1 | 5,800,000 | 냉장,냉동 + 김치       |      |
| 광파오븐      | MZ385EBTAD          | 540,000   | 드로워포함            |      |
| 식기세척기     | DIB22S              | 1,100,000 | 가구 부착형           |      |
| 쿡탑        | BEI3GQBI            | 1,220,000 | 인덕션3구            |      |
|           | CIHR-D302FB         | 450,000   | 인덕션2구 + 하이라이트 1구 |      |

- 주방가전제품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환기형 공기청정 시스템(시스클라인), 주방가전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 구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환기형 공기청정 시스템(시스클라인), 주방가전 | 신한은행  | 계약자별 가상계좌 부여 | 자이에스앤디(주) |

- 유상옵션(시스템에어컨, 주방 가전, 시스클라인) 공사비 납부 계좌는 개인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이며, 품목별로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유상옵션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공동주택 분양대금 입금 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주방가전, 시스클라인은시공 전문 자회사인 자이에스앤디(주)에서 계약 체결 및 시공 예정으로 계좌가 상이합니다.

**추가 선택품목(플러스옵션) 및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환기형 공기청정 시스템(시스클라인), 주방가전 관련 공통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선택 시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관한 시행지침] 제4조 1항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계약자는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상가 유상옵션은 계약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중도금 납부 이후에는 유상옵션 공급주체 및 시공사의 동의 없이 계약 해제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별도로 유상옵션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상가 유상옵션 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카다로그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다로그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가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등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일부 품목이 전시되오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은 본 공동주택 컨셉에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IX

## 기타 계약자 안내

###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 2에 따라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예정입니다.
- 국토교통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특정 일자를 통보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전점검 진행절차는 추후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설비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 입주예정일 : 2026년 11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공급대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입주 약 3일 전부터 약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 유의사항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실입주 후 각 단지의 '입주자대표위원회(가칭)'에서 결정됩니다.
- 향후 입주 후에도 주변 건축물 및 도로공사가 진행될 수 있어 먼지, 소음 발생 및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부대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다함께 돌봄센터, 커뮤니티시설(피트니스, 필라테스, GX룸,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사우나, 독서실, 작은도서관), 주민운동시설, 스카이라운지 북카페(클럽클라우드)
- 지하주차장 높이 : 지하주차장 2층 진입 및 유효높이는 2.7M, 지하주차장 1층, 3층 유효높이는 2.3M, 주차장 차로 폭은 6M 이상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    |
|---------|----|
| 구분      | 등급 |
| 내진중요도 I | Ⅶ  |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 (MMI등급, I~Ⅶ)으로 표기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예비 인증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b>녹색건축 예비인증서</b></p>  <p>건축물 개요<br/>건축물 명: 영주시 상향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br/>건축주: 엘케이파트너스 주식회사<br/>공 (예정) 일: 2026.08.31.<br/>주 소: 경상북도 영주시 상향동 117번지<br/>층 수: 지하3층, 지상27층<br/>연 면 적: 134,844.4074㎡ (합계 연면적: 134,204.4164㎡)<br/>건축물 용도: 공동주택<br/>설 계 자: (주)세원건축사사무소</p> <p>인증 개요<br/>인증번호: G-SEED-P-2023-0952-5<br/>인증기관: 한국부동산원<br/>유효기간: 2023.08.29. - 사용승인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말년</p> <p>인증 등급<br/>인증등급: 일반(4등급)<br/>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립건축정보시스템 2021-278호, 환경부 고시 제2023-66호, 인증기준 운영세칙(2023.03.13.))</p> <p>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일반(그린4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종합등급 ★☆☆☆</p> <p>2023년 08월 29일</p> <p style="text-align: center;"><b>한국부동산원</b></p> <p>※ 예비인증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p> | <p><b>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b></p> <p>1. 공동주택명 : 영주시 상향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br/>2. 신 청 자 : 엘케이파트너스 주식회사<br/>3. 대 지 위 치 : 경상북도 영주시 상향동 산78-1번지 일원<br/>4. 성능 등급<br/>가. 소음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방음벽을 포함 성능</td><td>★★★★</td></tr> <tr><td>2. 방음벽을 포함 성능</td><td>★★</td></tr> <tr><td>3. 세대 간 경계벽의 사용성능</td><td>★★★</td></tr> <tr><td>4. 방음소음도, 음압도에 대한 실내의 소음도</td><td>★★★</td></tr> <tr><td>5. 화염경 감배수 소음</td><td>★★</td></tr> </table> <p>나. 구 조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내구성</td><td>★</td></tr> <tr><td>2. 가파성</td><td>★★</td></tr> <tr><td>3. 수리용이성</td><td>★★</td></tr> <tr><td>4. 수리용이성</td><td>★★</td></tr> </table> <p>다. 환경 관련 등급(계속)</p> <table border="1">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방음벽을 포함 성능</td><td>★★★★</td></tr> <tr><td>2. 방음벽을 포함 성능</td><td>★★</td></tr> <tr><td>3. 세대 간 경계벽의 사용성능</td><td>★★★</td></tr> <tr><td>4. 방음소음도, 음압도에 대한 실내의 소음도</td><td>★★★</td></tr> <tr><td>5. 화염경 감배수 소음</td><td>★★</td></tr> </table> <p>라. 생활 환경 등급</p> <table border="1">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난이내외 경계벽의 성능도 포함 및 연면</td><td>★★★★</td></tr> <tr><td>2. 대공방음의 연면적</td><td>★★</td></tr> <tr><td>3. 방음기재벽 및 방음기재벽의 적용성</td><td>★★</td></tr> <tr><td>4. 생활민원시설의 준수성</td><td>★★</td></tr> <tr><td>5. 생활민원시설의 준수성</td><td>★★</td></tr> <tr><td>6. 생활민원시설의 준수성</td><td>★★</td></tr> <tr><td>7. 생활민원시설의 준수성</td><td>★★</td></tr> <tr><td>8. 생활민원시설의 준수성</td><td>★★</td></tr> <tr><td>9. 생활민원시설의 준수성</td><td>★★</td></tr> <tr><td>10. 생활민원시설의 준수성</td><td>★★</td></tr> <tr><td>11. 생활민원시설의 준수성</td><td>★★</td></tr> <tr><td>12. 생활민원시설의 준수성</td><td>★★</td></tr> <tr><td>13. 생활민원시설의 준수성</td><td>★★</td></tr> <tr><td>14. 생활민원시설의 준수성</td><td>★★</td></tr> <tr><td>15. 생활민원시설의 준수성</td><td>★★</td></tr> <tr><td>16. 생활민원시설의 준수성</td><td>★★</td></tr> <tr><td>17. 생활민원시설의 준수성</td><td>★★</td></tr> </table> <p>2023년 08월 29일</p> <p style="text-align: center;"><b>한국부동산원</b></p> <p>※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 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1. 방음벽을 포함 성능                      | ★★★★                             | 2. 방음벽을 포함 성능 | ★★ | 3. 세대 간 경계벽의 사용성능 | ★★★ | 4. 방음소음도, 음압도에 대한 실내의 소음도 | ★★★ | 5. 화염경 감배수 소음 | ★★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1. 내구성 | ★ | 2. 가파성 | ★★ | 3. 수리용이성 | ★★ | 4. 수리용이성 | ★★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1. 방음벽을 포함 성능 | ★★★★ | 2. 방음벽을 포함 성능 | ★★ | 3. 세대 간 경계벽의 사용성능 | ★★★ | 4. 방음소음도, 음압도에 대한 실내의 소음도 | ★★★ | 5. 화염경 감배수 소음 | ★★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1. 난이내외 경계벽의 성능도 포함 및 연면 | ★★★★ | 2. 대공방음의 연면적 | ★★ | 3. 방음기재벽 및 방음기재벽의 적용성 | ★★ | 4. 생활민원시설의 준수성 | ★★ | 5. 생활민원시설의 준수성 | ★★ | 6. 생활민원시설의 준수성 | ★★ | 7. 생활민원시설의 준수성 | ★★ | 8. 생활민원시설의 준수성 | ★★ | 9. 생활민원시설의 준수성 | ★★ | 10. 생활민원시설의 준수성 | ★★ | 11. 생활민원시설의 준수성 | ★★ | 12. 생활민원시설의 준수성 | ★★ | 13. 생활민원시설의 준수성 | ★★ | 14. 생활민원시설의 준수성 | ★★ | 15. 생활민원시설의 준수성 | ★★ | 16. 생활민원시설의 준수성 | ★★ | 17. 생활민원시설의 준수성 | ★★ | <p><b>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예비 인증서</b></p> <p>건축물 개요<br/>건축물명: 영주시 상향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br/>인증번호: 23-주-11-0116<br/>평가자: 영주분<br/>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br/>유효기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p> <p>인증등급: 1등급</p> <p>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p> <table border="1"> <tr><th>구분</th><th>단위연평균 에너지소비량 (kWh/㎡·년)</th><th>연평균 에너지소비량 (kWh/㎡·년)</th><th>1차 에너지소비량 (kWh/㎡·년)</th><th>단위연평균 CO<sub>2</sub> 배출량 (kg/㎡·년)</th><th>연평균 CO<sub>2</sub> 배출량 (kg/㎡·년)</th></tr> <tr><td>냉방</td><td>0.0</td><td>0.0</td><td>0.0</td><td>0.0</td><td>0.0</td></tr> <tr><td>난방</td><td>35.0</td><td>66.2</td><td>52.1</td><td>14.1</td><td>14.1</td></tr> <tr><td>교합</td><td>30.7</td><td>36.2</td><td>26.8</td><td>7.4</td><td>7.4</td></tr> <tr><td>조명</td><td>9.0</td><td>7.8</td><td>21.7</td><td>3.7</td><td>3.7</td></tr> <tr><td>환기</td><td>—</td><td>2.5</td><td>7.0</td><td>1.9</td><td>1.9</td></tr> <tr><td>총계</td><td>74.7</td><td>114.8</td><td>107.6</td><td>26.4</td><td>26.4</td></tr> </table> <p>■ 단위연평균 에너지소비량: 건축물이 냉방, 난방, 교합,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연평균 에너지량<br/>■ 단위연평균 에너지소비량: 건축물이 냉방, 난방, 교합,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쓰는 단위연평균 에너지량<br/>■ 단위연평균 1차 에너지소비량: 에너지소비량에 연료의 질적, 기상,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연평균 에너지량<br/>■ 단위연평균 CO<sub>2</sub> 배출량: 단위연평균 에너지소비량에 연료의 질적 손실을 포함한 단위연평균 CO<sub>2</sub> 배출량</p> <p>※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 ] 설치된 [ V ] [ ] 냉방설비(가)가 건축되었습니다.<br/>※ 예비인증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br/>※ 단위연평균 1차에너지소비량은 온도 등에 따른 변동계수를 반영한 값입니다.</p> <p>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1차에너지소비량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2023년 08월 29일</p> <p style="text-align: center;"><b>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b></p> | 구분 | 단위연평균 에너지소비량 (kWh/㎡·년) | 연평균 에너지소비량 (kWh/㎡·년) | 1차 에너지소비량 (kWh/㎡·년) | 단위연평균 CO <sub>2</sub> 배출량 (kg/㎡·년) | 연평균 CO <sub>2</sub> 배출량 (kg/㎡·년) | 냉방 | 0.0 | 0.0 | 0.0 | 0.0 | 0.0 | 난방 | 35.0 | 66.2 | 52.1 | 14.1 | 14.1 | 교합 | 30.7 | 36.2 | 26.8 | 7.4 | 7.4 | 조명 | 9.0 | 7.8 | 21.7 | 3.7 | 3.7 | 환기 | — | 2.5 | 7.0 | 1.9 | 1.9 | 총계 | 74.7 | 114.8 | 107.6 | 26.4 | 26.4 |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방음벽을 포함 성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방음벽을 포함 성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세대 간 경계벽의 사용성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방음소음도, 음압도에 대한 실내의 소음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화염경 감배수 소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내구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가파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수리용이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수리용이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방음벽을 포함 성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방음벽을 포함 성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세대 간 경계벽의 사용성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방음소음도, 음압도에 대한 실내의 소음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화염경 감배수 소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난이내외 경계벽의 성능도 포함 및 연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대공방음의 연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방음기재벽 및 방음기재벽의 적용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생활민원시설의 준수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생활민원시설의 준수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생활민원시설의 준수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생활민원시설의 준수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생활민원시설의 준수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생활민원시설의 준수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생활민원시설의 준수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생활민원시설의 준수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생활민원시설의 준수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생활민원시설의 준수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생활민원시설의 준수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생활민원시설의 준수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생활민원시설의 준수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생활민원시설의 준수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단위연평균 에너지소비량 (kWh/㎡·년)  | 연평균 에너지소비량 (kWh/㎡·년) | 1차 에너지소비량 (kWh/㎡·년) | 단위연평균 CO <sub>2</sub> 배출량 (kg/㎡·년) | 연평균 CO <sub>2</sub> 배출량 (kg/㎡·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냉방  | 0.0   | 0.0                  | 0.0                 | 0.0                                | 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난방  | 35.0  | 66.2                 | 52.1                | 14.1                               | 14.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합  | 30.7  | 36.2                 | 26.8                | 7.4                                | 7.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명  | 9.0   | 7.8                  | 21.7                | 3.7                                | 3.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환기  | —   | 2.5                  | 7.0                 | 1.9                                | 1.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계  | 74.7  | 114.8                | 107.6               | 26.4                               | 26.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적용여부)

| 의무사항                       | 적용여부                                  |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
|----------------------------|---------------------------------------|---|
| 건축부분 설계기준<br>(제7조 제2항 제1호) | 단열조치 준수(가목)                           |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
|                            |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
|                            | 방습층 설치(다목)                            |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
| 기계부분 설계기준<br>(제7조 제2항 제2호) |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br>(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
|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 설비 조건 준수  |
|                            | 고효율 가정용보일러 (다목)                       | 적용 가정용보일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
|                            | 고효율 전동기(라목)                           |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
|                            | 고효율 난방, 급탕 · 급수펌프(마목)                 |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
|                            |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
| 전기부분 설계기준<br>(제7조 제2항 제3호) |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
|                            |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
|                            |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
|                            | 조명설치 설치(다목)                           |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
|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 실별 온도조절장치 (바목)             | 적용 세대 내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보증서 번호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
| 제01292023-101-0006500호 | 243,208,700,000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채무의 내용 ( 주택분양보증약관 제1조 )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 주택분양보증약관 제2조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공급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공급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공급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 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공급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공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공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 (예시: 홀오토, 발코니사시, 마이너스오피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계약 이전에 그 주택공급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 ( 주택분양보증약관 제4조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공급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사업주체(시행사)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 분양자(매도인 또는 임대인)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 또는 임차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또는 임대수입금(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분양전환금 등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할 일체의 금원을 포함한다)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별도계약품목은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관리형 토지신탁

본 사업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인 "엘케이파트너스(주)", 시행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 및 시공사 "지에스건설(주)" 대출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간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① 본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은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한도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사 겸 수익사인 "엘케이파트너스(주)"가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한다.
- ②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시행위탁사 겸 수익사인 "엘케이파트너스(주)"와 수탁사 "(주)하나자산신탁" 사이의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되는 경우(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 포함), 본 사업상 시행자의 지위에 기한 수탁사의 모든 권리·의무는 시행위탁사 겸 수익사인 "엘케이파트너스(주)"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에 따라 수탁사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공급계약서 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시행위탁사 겸 수익사인 "엘케이파트너스(주)"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된다.
- ③ 분양계약자는 본 분양물건이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하자보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이 위탁사 겸 수익자인 "엘케이파트너스(주)"와 시공사인 "지에스건설(주)"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④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기타사업비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 ⑤ 본 공급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 ⑥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구 분   | 건축감리            | 전기감리        | 소방          | 정보통신               |
|-------|-----------------|-------------|-------------|--------------------|
| 회 사 명 | (주)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 (주)건일엠이씨    | (주)지화기술단    | (주)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 감리금액  | 3,287,238,000   | 543,348,150 | 760,701,700 | 277,200,000        |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구 분    | 시행수탁자                                       | 시행위탁자                    | 시공사                      |
|--------|---|--------------------------|--------------------------|
| 상 호    | (주)하나자산신탁                                   | 엘케이파트너스(주)               | 지에스건설(주)                 |
| 법인등록번호 | 110111-1714818                              | 230111-0280295           | 110111-0002694           |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br>(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 242, 3층(달동)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청진동, 그랑서울) |

X

## 유의사항

| 구분                | 내용   |
|-------------------|--|
| 일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또는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 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단지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li> <li>• 견본주택,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를 자세히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li> <li>•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li> <li>•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동법시행령 제5조 및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됩니다.</li> <li>• 일부 세대는 공사품질관리를 위하여 선행시공 세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li> <li>• 주택법 제54조 규정에 의거 마감자재 목록표는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에 비치 및 게시되어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부대복리시설 등)은 견본주택 내 비치한 도면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li> </ul>        |
| 공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홍보물은 2023년 11월 사업계획승인 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li> <li>• 홍보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 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최초 사업계획승인일이 2023년 5월 31일로 소방내진설계가 적용됩니다.</li> <li>• 아파트 현장여건(지질상태, 주변 민원 등)에 따라 공사공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기능/구조/성능/품질 등 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li> </ul>  |
| 사업지 및 도로 단지 주변 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경계, 사업부지 면적 등은 최종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면적 및 대지지분의 증감 발생 및 이에 대한 공부정리에 대하여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li> <li>• 단지의 남측 및 동측에는 원당로 및 영동선 철도가 인접하여 있으며, 단지 남측에 개설예정인 13.5m~16.5m도로(예정/기부채납)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지 남측의 도로는 경사도로 인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향후 소음영향평가 실시 후 결과에 따라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경계에는 투시형 펜스 (방음벽 포함) 또는 조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부지내 옹벽 지지를 위해 지하 매설물이 설치될 경우 영구 점용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li> <li>• 단지 내,외부의 레벨차이는 사면처리, 자연석옹벽, 조경석옹벽, 전석 쌓기 또는 보강토 옹벽으로 계획되어지며 그 위치 및 높이, 형태는 준공접수 인·허가 과정 또는 현장주변 여건(도로현황, 레벨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반시설의 위치, 도로, 하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분묘 및 송전탑 등 혐오시설 유무, 주변 개발현황 등 단지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물 및 모형과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li> <li>• 단지의 인근 산지 일대에 일부 분묘가 위치하고 있어 조망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li> <li>• 단지 주변의 일부 사업체, 농경지(비료, 농약) 및 목장 등으로 인하여 소음, 냄새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li> <li>•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향후 공사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li> <li>•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바랍니다.</li> <li>• 본 단지의 남측에 조성되는 공원(예정), 주민공동시설(계획), 주차장(예정) 등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인한 소음, 사생활 침해 등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공원, 주민공동시설부지,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 및 기반시설 등은 해당관청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양도 예정이며, 조성계획 및 설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지 경계 외부의 시설은 본 아파트 시공사의 공사분이 아닙니다.</li> <li>• 단지내 공공하수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은 향후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합니다.</li> <li>• 공원 계획에 따라 공원과외의 단차 및 출입로 인해 해당 출입구 주변의 저층부에서는 소음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본 사업지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 공원, 아파트 잔·출입 도로(인도보도 포함), 단지 외부(경계) 도로 및 도로 선형의 변경은 주변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
|    | 학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행사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영주시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의견청취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li> <li>•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영주시청이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관청인 영주시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의견청취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li> <li>• 초등학교는 영주중앙초등학교에 배정될 예정이며, 향후 배정방법은 경상북도교육청 취학업무 추진 계획 및 학급 편성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중학교는 영주시 학교군내 분산 배치될 예정이며, 향후 배정방법은 경상북도교육청 중학교 입학업무 관리지침 및 학급 편성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고등학교는 경상북도단일학교군 지원 후 추첨을 통하여 배정될 예정입니다. 향후 배정방법은 경상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관리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학생배정 계획은 향후 사업계획(개발 및 입주시기, 위치, 주택형 세대수 등)의 변경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지원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초등학교 자녀의 안전한 통학환경 제공을 위하여 단지에서 영주중앙초등학교까지 등하교 셔틀버스 운영을 위하여 시행위탁자에서 25인승 버스 신차 2대를 단지에 무상기증하며 2년간 운영비 및 유지비용을 지원합니다.</li> <li>• 운영비의 지원은 등교 4회(2대*2회), 하교 4회(2대*2회) 범위 내이며, 승하차 도우미 비용은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단지 주민의 자원봉사 또는 입주민 비용부담으로 합니다.</li> <li>• 셔틀버스 운행개시는 2027년 3월부터 진행하며, 운영비 지원기간 (24개월) 경과 후 셔틀버스 운영비 지원은 중단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차체비용으로 운영해야 합니다.</li> </ul>  |
| 단지 | 동별 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li> <li>• 101동, 107동, 108동에 인접하여 발전기용 급배기 D.A가 설치되며 발전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 연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각 동 지하층에는 제연휀틀이 설치되어 화재 등으로 인한 작동 시 저층부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일부 동은 주변 건물 및 구조물, 기존 건물의 재건축 및 증축, 단지 내 인접 동 및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일부 동 호에는 이삿짐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하므로 승강기를 이용하여야 합니다.</li> <li>• 단지내,외에 레벨차가 있는 구간에는 자연석 쌓기, 비탈면, 옹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본 단지의 여건 상 단지 북측 세대와 인접한 구간 및 주출입구 인근 등 단지 경계부에 옹벽 및 비탈면이 다수 형성되므로, 단지 모형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은 주행 차량 또는 보행자로 인해 생활권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각 동별 계단실 내 창호는 일부는 고정창, 일부는 프로젝트창으로 적용되며, 프로젝트창의 적용위치는 층별, 동별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li> <li>• 엘리베이터홀 내 창호는 위치에 따라 적용여부 및 형태,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동의 1층에는 출입구 등 지상층 시설물로 인하여 엘리베이터홀 및 계단실의 창호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103동의 최상층에는 CLUB CLOUD(스카이라운지 북카페)가 계획되어 있어, 인접동 및 세대에서는 CLUB CLOUD 내부조명 및 외부경관조명으로 인한 빛의 산란이나, 설비의 가동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CLUB CLOUD의 이용자들로 인하여 인접동 및 하부 세대에서는 소음피해, 사생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103동 입주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CLUB CLOUD 전용 엘리베이터 출입구는 분리되어 설치되나, 비상 시에는 안전한 피난 및 구조활동을 위하여 주거동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비상탈출문(설치여부는 층별로 상이함) 및 계단 등 공용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3동 입주민을 위한 엘리베이터는 소방구조활동시에만 CLUB CLOUD층(25층)에 정지하며, 평상시에는 운행하지 않으므로 CLUB CLOUD 이용시에는 1층 및 지하층에 설치된 전용 출입구 및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합니다.</li> </ul> |

|                               |  |
|-------------------------------|--|
| <p>단지계획<br/>(설계, 디자인, 마감)</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 근린생활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내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통신 등 각종 인입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악취발생·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주거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동진입로 등), 옥외 계단실 및 승강기, 어린이집, 경로당, 돌봄센터, CLUB XIAN, 근린생활시설, 조경시설(수공간 등),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단지 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구조물(건물, 문주 등), 설비(각종 기계장비, 에어컨실외기, 보일러 연도 등), 이용자로 인한 소음, 진동, 불빛, 분진, 조망의 저해, 사생활 침해 등 각종 생활권 및 환경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구간별 사업부지 단차 구간에 조경석 쌓기 또는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인허가 조건, 미관,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비상차도, 산책로, 동진입로 등 단지 내 도로 일부 구간에서 부지 내 단차 등의 이유로 경사가가 반영되며, 일부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구간에는 장애인용 경사가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105~108동 상부에 공용부 전기 생산을 위한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규모(크기, 높이, 개소)는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일조량 및 구조물 배치에 따라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연도, 고가수조,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태양광 집광판, 이동통신 중계기,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치장석재/벽돌 및 필로티 마감은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각 동 1층에 출입 및 통행을 위한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주출입구 및 부출입구를 제외한 보행자 전용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원의 통행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li> <li>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배치도 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수량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옥외계단 및 옥외 엘리베이터는 실시공과정에서 디자인, 색상, 설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수경 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li> <li>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시설물의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전기통신사업법 제 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 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단지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 옥외안테나 설치 예정위치 : 옥상층 - 102동, 103동, 107동</li> <li>- 이동통신설비(중계장치) 설치 예정위치 : 102동, 103동, 107동 옥상층 및 103동, 107동 지하2층 동전기실</li> <li>도시가스 배관의 세대 내 원활한 인입 및 가스계량기 설치를 위해 다용도실의 천장고 및 마감면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일부 동 전면 또는 후면에 외부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인근 세대는 소음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단지 모형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단지 배치상 레벨차에 의해 데크로 분할 계획되어 있으며, 각 데크의 수직면 및 인접 대지와와의 레벨차에 따른 옹벽면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소방용 안전매트 구간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되지 않으며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식재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유아 놀이터는 어린이집 전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입주자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li> <li>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 상부에 옥상조경 혹은 인조잔디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조경계획은 옥상의 환경을 고려해 실시설계 및 시공시 확정됩니다.</li> <li>공동주택 및 기타 건축물 외관, 단지명칭, 동호수 번호, 외부색채와 계획은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 및 협의에 따라 입주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
| <p>외관계획</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장부 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외벽 및 발코니, 지붕 등에 장식용 구조물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등), 공용부 디자인(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경비실, 부대시설 등), 외부 시설물(문주,</li> </ul>   |

|            |   |
|------------|---|
|            | <p>DA,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분리수거장 등), 조경 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옹벽 디자인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발주처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의 고유한 업무 영역으로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파트 저층부는 석재, 석재뿔칠 및 페인트 등 기타 자재로 마감되고, 주동 형태에 따라 석재 및 페인트 등 기타자재의 적용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문주는 진입공간 배치 현황 및 현장여건에 맞춰 형태, 크기, 배치가 결정되며 문주 설치로 인해 주 진입부에 위치한 일부 저층 세대에서는 세대 조망에 간섭 및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문주에 설치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외부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은 단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에 대해 타사 및 당사의 타 단지를 비교하여 추가 설치 또는 교체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li> <li>• 아파트에 적용된 외관특화, 입면, 색채 및 마감재 등 디자인 일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li> <li>• 아파트 옥상 및 외벽에 경관조명, 조형물 및 로고(BI) 등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 일조,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LED조명으로 인하여 인접세대는 빛반사로 인한 눈부심, 소음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경관조명은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 및 작동에 제약이 있거나 위치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li> </ul>   |
| 공용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에어컨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수거시설, 옥외 엘리베이터 등)로 인해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101동 인근에 근린생활시설 부속시설물(에어컨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등)이 추후 상가 입점자 공사로 인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클럽자이안, 어린이집 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li> <li>• 주민공동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시설운영을 위한 내부 집기류(이동가구, 비품, 서적, 스탠드 등)는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공동주택관리법 제 11조 및 제12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li> <li>•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의 성능개선 또는 인허가 협의결과에 따라 실 시공 시 위치, 동선, 실내구획, 입면 디자인,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아파트 단지내에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이 설치되어 이로 인한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CLUB XIAN(피트니스클럽, GX룸, 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라운지 등), 부속동(아너스클럽 등) 및 일부 공용부(지하주차장 및 아파트 PIT)에는 입주지정기간을 전후하여 입주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입주관리업무를 진행하며, 입주 후 약 27개월까지 AS업무를 위한 사무실 및 창고가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각 운영기간은 단지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도 및 전기요금 등은 관리비로 부과됩니다. 커뮤니티센터에는 운동기구가 설치되나, 운동기구는 준공후 입주지정기간이 종료된 이후 설치 될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li> <li>• CLUB XIAN은 입주지정기간 경과 후 관리주체에서 운영하게 되며, 운영 시 입주안내문과 CLUB XIAN 운영 홍보내용을 통해 관리주체가 사전 고지한 시설운영 시간과 요금표에 따라 공용 또는 개별세대 관리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한 입주진 결의 등에 의해 운영시간과 요금제는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li> <li>• CLUB XIAN요금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소모품비, 수도광열비, 총당금 등 제반 운영비용을 포함하며, 관리수입으로 전액 귀속됩니다.</li> <li>•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li> <li>• 스쿨버스존 내 보호자대기소의 집기류는 별도 제공되지 않습니다.</li> <li>• 스카이라운지 하부세대의 원활한 배수 성능 확보를 위한 통기배관 및 우수입상관등이 노출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li> <li>• 주민공동시설 난방 급탕을 위한 보일러 연도가 외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 세대는 조망권, 소음, 진동, 열기, 사생활 침해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클럽자이안은 지하층에 설치되나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가 일부 가능합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 및 부속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해 주변 인접 동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설치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 및 크기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li> <li>• 준공 후 조경 유지관리 의무는 관리주체 및 입주자에게 있으며,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조경수 고사 및 조경 하자는 시공사에 책임이 없습니다.</li> </ul> |
| 공용설비 및 시스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고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li> <li>•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공조시스템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li> <li>•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li> <li>• 관련 법령 및 인허가 조건에 의해 지하저수조와 빗물저류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li> <li>• 지하주차장, 필로티 및 근린생활시설에는 배관 등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li> </ul>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 등(보안 등) 및 경관조명에 의한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Top Light, 제연헬륨, DA)과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기계실, 헬륨 및 이와 유사한 기계 설비 장치가 설치되는 실에 인접한 곳에서는 장비로 인한 소음,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무인택배함은 동별 1개소 지하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홈네트워크를 통한 화상통화는 불가합니다.</li> <li>• 관련 법령 및 인허가 조건에 의해 복측 산지 유입수를 단지내 하수 관로를 통하여 처리 예정이며, 지하저수조와 빗물저류조 및 우수펌프시설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li> </ul>   |
|       | 주차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li> <li>• 주차장은 아파트(지하) 1,074대, 근린생활시설(지상) 6대, 총 1,080대(경차 및 장애인 주차, 환경친화적자동차 주차구역 포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li> <li>• 지하 주차장의 주차면 계획과 일반형, 확장형, 장애인, 경형주차 주차구획의 위치 및 비율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구조 형식상 지하주차장의 주거동 직하부 주차구획구간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특성상 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 ~ 지하 3층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구획별로 지하주차장 층수 및 주거동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의 주거동 진입동선(연결통로 및 출입구)은 개선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레벨 계획에 따라 101동, 108동은 지하2층~지하3층의 주차장을 사용가능하며, 104동, 105동은 지하1층~지하2층의 주차장을 사용가능합니다.</li> <li>• 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 여건에 따라 PC 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PIT)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총 54개(급속 2대, 완속 52대)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의 일부 구간은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의 간섭으로 통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주출입구 지하2층 주차장 진입 및 주행 유효높이는 2.7m로 소형택배차의 진입은 가능하나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택배차 등의 진입은 불가합니다.</li> <li>• 부출입구 지하3층 주차장 진입 및 주행 유효높이는 2.3m로 이를 초과하는 차량의 진입은 불가합니다.</li> <li>• 지하1층의 주차장 진입 및 주행 유효높이는 2.3m로 이를 초과하는 차량은 지하1층의 진입이 불가합니다.</li> <li>•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주출입구 등 차량출입구에 회차를 위한 원형교차로가 제공되지 않으며, 지하주차장 내부 동선을 통해 회차하여야 합니다.</li> </ul> |
|       | 근린생활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린생활시설 대지지분은 근린생활시설(지하) 및 주차장(지상)을 포함한 대지면적으로 구획하였습니다. (단, 구획선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li> <li>•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나,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 지상 부위의 차로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일체의 점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시점에 따라 MD계획이 미확정될 수 있으며, 추후 MD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인근에 설치되며 101동에 인접하여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용 저수조, 탈취설비, 실외기, 연도 및 각종 장비류로 인하여 인근동에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용 주차장은 근린생활시설 인근에 아파트 주차장과 분리되어 있어 있습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은 대지 및 전면도로의 경사도에 따라 호실별 출입문, 바닥면의 높이가 상이할 수 있으며, 단차부의 위치 및 바닥면의 높이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
| 단위 세대 | 평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li> <li>• 주택형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아파트 세대의 천장 높이는 2,400mm로 시공됩니다.</li> <li>• 입주 시 세대 내에 침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기 바랍니다.</li> <li>•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li> <li>•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현관, 현관상고, 비확장발코니, 실외기실, 하향식 피난구실, 보일러실, 욕조하부, 샤워부스 등에는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으며, 욕실 및 다용도실의 경우, 마감 여건상 일부 구간에만 바닥난방이 시공됩니다.</li> <li>• 세대 내부 벽체는 마감 품질 확보를 위하여 재료(콘크리트, 조적, 경량벽체), 길이 및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간 벽체에는 공사를 위한 작업통로가 설치될 수 있으며, 작업 완료 후 조적 또는 건식벽체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li> </ul>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4C 타입은 가스배관 인입을 위하여 다용도실 내 일부 천장의 단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 내 시공된 사항과 달리 동별, 라인별로 단열재 및 결로방지재의 시공으로 인하여 일부 벽체의 두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실외기실, 하향식피난구실 등 발코니 일부의 면적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li> </ul>  |
|  | 발코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코니는 계획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또는 선홍통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li> <li>•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 측벽 및 천장에 최소 결로방지를 위한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li> <li>• 세탁기와 보일러가 설치되는 공간 및 발코니에 수전과 실외기실에 선홍통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li> <li>• 환기시스템 설치 또는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천장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내부 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화재 등 유사시에는 세대내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대피하여야 합니다. (1층 및 필로티 상부세대 제외) 대피공간은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 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 (1층 및 필로티 상부세대 제외)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항시 실외기실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공사의 책임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li> <li>•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의 발코니가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li> <li>•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각실과 발코니가 만나는 면에 창호가 설치되며 발코니 외부쪽으로는 창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층 및 하층세대 단열 및 배수설계로 인해 발코니의 천장고 및 창호 높이가 축소 시공되며 발코니의 바닥레벨이 거실 및 침실보다 높게 시공되어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기본형(비확장) 세대에서 전체 발코니가 연결되어진 경우 각실이 아닌 거실 혹은 주방 등 특정실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게 되어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ul> |
|  | 창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위세대 타입 및 실/부위에 따라 창호 및 하드웨어의 종류 및 사양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li> <li>•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 확장 시 아파트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 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 외부창 및 내부창호의 사양 (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및 색상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으나 동등급 이상으로 설치됩니다.</li> <li>• 현장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 및 문짝의 폭, 높이, 재질, 개폐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보일러 설치로 다용도실 창호 일부가 고정되어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정창에는 손잡이가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 하향식피난구실에는 화재 등 유사 시 사용을 목적으로 창호를 설치하여 창호손잡이가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 공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겨울철 밀폐된 생활 환경 속에서 음식 조리, 가습기 사용, 실내 화분, 빨래 등으로 인해 실내 상대 습도가 40~50% 이상이 될 경우에는 창호 유리면 및 창틀 주변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연환기 또는 세대환기 시스템을 작동하여 결로 현상을 예방해주시기 바랍니다.</li> <li>• 철제문의 경우,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사양(디자인, 문짝 두께, 문틀, 경첩의 형태, 하드웨어, 마감 등)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실내에서 직접 출입하는 실외기실의 출입문은 결로 방지를 위하여 세부 설치 위치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외기실에 설치된 실외기용 배기그릴은 겨울철 에어컨 미사용시 닫아두어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자의 관리가 필요합니다.</li> </ul>                                   |
|  | 가구 및 마감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붙박이 가구(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 레일, 조명, 스위치 등)는 본 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자재(석재류, 타일류, 상판류, 시트류, 원목마루, 강마루 등)는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및 패턴 등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주택형별 옵션선택에 따라 가구 및 수납계획(디자인, 크기, 도어갯수 등), 우물천장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li> <li>• 욕실 출입문(부부, 가족)은 본 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li> <li>• 인접 세대 간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해 일부 세대 아트월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설비배관 등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 욕실에 설치되는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의 설치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냉장고장 형태는 옵션사항이며, 이에 따라 냉장고장이 상이하게 설치되오니, 계약 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미선택 시 냉장고(입주자 직접 설치 가전)가 제품사양에 따라 일부 돌출될 수 있습니다.</li> <li>• 욕실거울, 수전류,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및 샤워부스, 철재류는 녹 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li> <li>• 목창호, 시트판넬 등의 고정을 위해 본 공사 시 Staple Tacker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li> <li>• 욕실장, 샤워부스, 시스템선반의 형태,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용도실 또는 발코니에 건조기 사용 시 온도 습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어, 결로 및 기타 하자방지를 위하여 환기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li> <li>•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 표면재(벽지, 시트, LPM 등)는 제품 생산 시 미세한 색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 적용되는 석재류(인조석재 포함)는 자재 특성 상 색상, 무늬, 패턴 등이 균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본 공사 시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자재 특성 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적용된 제품과 동급 이상의 자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 적용되는 몰딩, 시트패널 등은 본 공사시 품질 개선을 위해 디테일 및 사이즈, 취부 방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 적용되는 타일은 시공 시 인접 타일과 줄눈 두께 상이 혹은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본 공사 시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형 타일의 재료적 특성 상 각 장 별 색상 및 패턴의 차이(멀티 패턴 타일)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거실, 주방 등에 시공되는 바닥타일의 경우 사선방향 균열 및 파손 하자를 예방하기 위해 분절시공 될 수 있습니다.</li> <li>• 양변기 인근 매립형 휴지걸이를 설치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는 노출형 휴지걸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 창호 상부의 커튼박스는 천장 속 단열마감을 위하여 커튼박스의 폭, 깊이, 길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유상흡선 품목인 현관중문은 주택형별 사양(개폐타입, 사이즈, 색상 등)이 다르며, 본 공사 시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유상흡선 품목인 현관중문 설치 유무에 따라 신발장의 형태나 규격, 설치 위치, 도어 개수, 현관창고 도어 위치(84m<sup>2</sup>B)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PVC 단열도어는 본 시공 시 동등 성능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침실과 욕실도어에 손끼임방지 장치가 제공됩니다.</li> <li>• 기본형 또는 확장형 평면에 제공되는 품목 (주방가구, 냉장고장,드레스룸 선반 등)이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전 확장시 제공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옵션 선택에 따라 타일별 평면 및 마감재 적용부위, 벽체, 가구계획, 일부 공간의 조명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ul>  |
| 전기, 기계, 설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환기시스템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li> <li>•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 시 욕실문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환기 디퓨저,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 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에어컨은 실외기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li> <li>• 시스템에어컨 옵션선택 시 기본 냉매매립배관은 천장 속 노출 냉매배관으로 변경 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설치 공사비는 변경공사를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li> <li>•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에어컨 설치 시에는 별도의 실외기 고정기대 및 에어가이드 설치를 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에어컨 가동 시 실외기실 루버는 반드시 열려있어야 되며, 루버 부근에 방충망 또는 물건 적치 시 공기 순환 장애로 인한 효율 저하 및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li> <li>• 천장형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시 기본으로 설치되는 냉매배관 거실, 안방 2개소는 스탠드형과 벽걸이형으로 시공됩니다.</li> <li>• 자동제어시스템 및 온도, 환기조절기 등은 시스클라인 선택유무 및 내부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1층 세대 하부에 각동 제연을 위한 급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외벽 또는 세대 실외기실 등에 가스 입상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내부 일부층에 루프 배관 등으로 미관 저해 및 공간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욕실, 드레스룸 및 팬트리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li> <li>• 침실, 알파룸, 베타공간이 옵션 선택에 따라 대형 드레스룸 및 팬트리로 변경될 경우 온도조절기는 설치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li> <li>• 자이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연동은 스마트폰 OS 정책에 따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패스카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li> <li>• 세대 내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 전자식 스위치,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의 위치 및 수량은 단위세대 주택형, 타입, 옵션, 아트월 위치 등에 따라 변경됩니다.</li> <li>• 인덕션 등 전기 쿡탑 적용 시 가스 배관은 세대 가스 계량기가 설치된 장소 까지 제공되고 이 경우 가스 쿡탑 설치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라며 전기쿡탑 옵션 비용은 해당 금액을 감안한 금액입니다.</li> <li>• 주방에 설치되는 자동식 소화기는 사용 열원에 맞는 종류로 설치됩니다.</li> <li>• 주방 Style Up 옵션 선택 시 후드 타입에 따라 인근 천장에 자동식소화기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일부 대형 주택형에는 싱크대 하부 난방분배기 이외 별도 추가의 난방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공간제약과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마감 Style Up 옵션 선택 시, 신발장 상부 수납함 내부에 SMPS함이 설치되어, 수납공간이 줄어듭니다.</li> <li>• 소방 인허가청 요구조건에 따라 3~10층 구간에는 침실, 거실, 발코니 등 단위세대 내부에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시스클라인 옵션 선택 시 시스클라인 장비 본체에 내장된 센서에 의해 운전되며 기본 제공하는 거실 센서는 제외 됩니다.</li> <li>• 모델하우스 내 설치된 비데 리모컨 설치위치는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설치 위치는 향후 변경 될 수 있으며, 입주시에는 리모컨을 미부착후 기본 제공하여 드리오니 입주자의 사용 편의성 및 선호위치에 부착하여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li> <li>• 건조기와 세탁기를 2단 설치 하는 경우 가스보일러 점검 또는 교체시 건조기와 세탁기 분리와 재설치를 위한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아파트는 도시가스 연료를 사용하며, 세대별 보일러를 설치한 개별난방 방식이 적용됩니다.</li> <li>• 세대 보일러는 적절한 용량을 선정하였으나, 온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온수 사용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ul>   |
| <p style="text-align: center;">건본주택</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 마감재 이외의 유상옵션 품목 또는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건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건본주택의 온도조절기, 환기디퓨저, 스프링클러 헤드, 시스클라인, 시스템에어컨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건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차함, 세대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건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건본주택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 건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건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li> <li>• 건본주택에 미건립된 주택형의 경우 건본주택에 설치된 유사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시 상담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li> <li>• 건본주택에 설치된 일부 마감자재는 유상 옵션 품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상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기본형 마감자재 안내부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li> <li>• 건본주택에 설치된 위생기구는 유상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기본형 위생기구가 설치됩니다.</li> <li>• 건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는 유상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GS건설 표준화조명이 설치됩니다.</li> <li>• 건본주택 미건립 타입 84m<sup>2</sup>B 타입은 건립되어 있는 84m<sup>2</sup>A, 84m<sup>2</sup>C 타입의 마감자재에 준하여 시공됩니다.</li> <li>• 건본주택 미건립 타입 102m<sup>2</sup> 타입은 건립되어 있는 117m<sup>2</sup> 타입의 마감자재에 준하여 시공됩니다.</li> </ul> |

※ 부동산 실거래 신고 의무화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공급계약 체결 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 및 위임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6억 초과 주택형의 경우 공급계약 체결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의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시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 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시행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급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시공사와 무관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건본주택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  |
|-----------------------|--|
| 견본주택 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동 764-1   |
| 운영시간                  | 10:00 ~ 17:00  |
| 운영기간                  | 분양종료 시까지<br>※ 분양일정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대표번호를 통하여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분양문의                  | 1833-6344  |
| 사이버 견본주택<br>(공식 홈페이지) | <a href="http://xi.co.kr/yjs">http://xi.co.kr/yjs</a>                  |